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5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7. 14) 상정
- 제145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7. 1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산지원과장 이 도 극)

가. 제안이유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수리계의 조직·등록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수리계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수리계에서 비치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
- 수리계는 해산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을 준용함.(안 제8조)

- 기반시설 부지의 등록·실태조사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수리계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259호
의결 년월일	2008. 7. 18 (제145회)

제출년월일 : 2008. 6. 3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리계의 조직·등록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나. 수리계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수리계에서 비치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
- 라. 수리계는 해산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을 준용함.(안 제8조)
- 마. 기반시설 부지의 등록·실태조사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바. 수리계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적정하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이란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기반시설 중에서 관정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관리요령에 따른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등록) 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리계를 조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수리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약
2. 계원명부
3. 구역 내 토지원부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리계의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상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3월과 10월 중에 기반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하여 자체 부담으로 보수하고, 그 시설의 보존을 위하여 감시활동을 실시할 것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으로 복구할 것.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것

제6조(경비의 부과·징수)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서류비치)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경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부
5. 수리계 규약 및 계원명부
6. 구역 내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7.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8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3호에서 정하는 해산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의 해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리계의 장은 수리계가 해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기반시설 부지의 등록 등) ① 기반시설의 부지에 대한 명의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거나 등기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하고, 관리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표시한다.
2. 시장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부천시”로 표시한다.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② 제5조에 따른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 상황을 확인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반시설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기반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기능을 점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황조사 결과, 기반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반시설의 용도 폐지) ① 수리계는 해당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용도의 폐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구역 내 농경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3. 손괴시설의 보수가 경제성을 상실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수리계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의 면적이 10헥타아르 미만인 수리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감독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 등록부

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설명칭	설치 연월일	구역면적 (ha)	계원	등록 일자	비고

「주」 구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구역수를 표시

〈관계법령발췌서〉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2006.12.30, 2007.4.11, 2008.2.29>

1.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라 함은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 및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7.8.3>

1.~5. (생략)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양수장),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유지), 도로, 방조제, 둑(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110조(수리계)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수리계의 경비징수 의뢰 등) ① 수리계는 법 제11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뢰하려면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경비부과 명세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가 법 제1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주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기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조직기준

- 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수리계의 경비부과기준

- 가. 운영경비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비·관리비 전액
- 나.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다.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3. 수리계의 해산기준

-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 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 민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폐지 조례)

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제정 1973. 07. 01 조례 제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농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 항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농조"라 한다)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지개량계"라 함은 별첨 농지개량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농민자들로써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여하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전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제4조(감독기관) ①시장은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구역 면적 10정보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전항의 감독권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 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이 감독한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①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부"로 표시한다.
2. 시장이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부천시로 표시한다.
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농지개량계로 표시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전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농지개량계) ①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구역을 1개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약
2. 계원명부
3. 구역내 토지원부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기타 필요한 서류

③전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지개량계 등록부에 등록한다.

④시장은 관할구역내의 농지개량계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상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농지개량계의 의무) 농지개량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 유지물을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 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시장은 매년 1회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은 전 각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 ①농지개량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1. 경상적 유지관리 비용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용(재해복구비 포함)
3. 시설의 감가상각적립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 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경비부과 기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 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 전액
2.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잔존기간의 해당액

제11조(경비 징수방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비 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서류비치) 시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농지개량계 등록부
5. 농지개량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내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구역도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시설의 용도 폐지) ①농지개량계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 폐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구역내 농경지의 타 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용도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농지개량계 해산) ①시장은 농지개량계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제85조, 제86조 내지 제92조,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농지개량계의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1973. 07. 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조직된 농지개량계(수리계 또는 농지계량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것으로 본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 시행후 2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